

신탁계약서 변경비교표

□ 펀드명 : 트러스톤 백년대계 EMP50 자산배분 증권투자신탁[채권혼합-재간접형]

변경 전	변경 후
<p>제3조(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명칭 등)</p> <p>① ~ ③ (생략)</p> <p>④이 투자신탁은 법 제233조의 규정에 의한 모자형투자신탁의 자투자신탁으로서 모두투자신탁은 다음과 같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트러스톤 백년대계 증권 모두투자신탁 [채권-재간접형] 2. 트러스톤 백년대계 증권 모두투자신탁 [주식-재간접형] 	<p>제3조(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명칭 등)</p> <p>① ~ 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이 투자신탁은 법 제233조의 규정에 의한 모자형투자신탁의 자투자신탁으로서 모두투자신탁은 다음과 같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트러스톤 글로벌채권 증권 모두투자신탁 [채권-재간접형] 2. 트러스톤 글로벌주식 증권 모두투자신탁 [주식-재간접형]
<p>제16조(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)</p> <p>집합투자업자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른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제15조제1항제1호의 모두투자신탁에의 투자는 100%이하로 한다. 다만,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가. 트러스톤 백년대계 증권모투자신탁 [채권-재간접형]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90%이하로 한다. 나. 트러스톤 백년대계 증권모투자신탁 [주식-재간접형]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0%이하로 한다. 2. (생략) 	<p>제16조(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)</p> <p>집합투자업자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른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제15조제1항제1호의 모두투자신탁에의 투자는 100%이하로 한다. 다만,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가. 트러스톤 글로벌채권 모투자신탁 [채권-재간접형]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90%이하로 한다. 나. 트러스톤 글로벌주식 증권모투자신탁 [주식-재간접형]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0%이하로 한다. 2. (현행과 같음)
<p><신 설></p>	<p>부 칙</p> <p>(시행일) 이 신탁계약은 2022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.</p>